

제주지방법원 2022. 6. 23 선고 2020가단690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3. 5. 1 선고 2022나13698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22. 6. 23 선고 2020가단69023 판결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5. 19.

판 결 선 고 2022. 6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E빌라 제3층 F호 중 1/2 지분에 관하여
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. 9. 25. 접수 제83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A과 피고는 2017. 2. 28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E빌라 제3층 F호에 관하여 각 1/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A과 피고는 2018. 4. 6. 혼인하였다.

다. A은 2019. 9. 25.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E빌라 제3층 F호 중 1/2 지분(다음부터는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.)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83410호로 2019. 9. 25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.

라. A은 2019. 11. 11. 피고와 이혼하였다.

마. A은 2020. 9. 21. 제주지방법원 2020하단120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, 2021. 4. 22.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

[인정사실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인정사실에 의하면, A은 2020. 9. 21. 파산신청을 하기 1년 전인 2019. 9. 25.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가 정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무상행위를 하였으므로,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같은 법 제391조 제4호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A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으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

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조병대